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이유

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건립중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2004. 4월중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신설하고, 기타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### 2. 관계법령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시설의 설치)

### 3. 주요골자

가.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를  
조례에 신설(안 제2조제5호)

나. 기타 용어정비(안 제5조제3항)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건은
  - 2004. 4월중 준공예정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명칭과 주소를 신설하고
  - 기히 사용중인 각종 용어를 정비보완 통일함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판단되며,
  - 특히 관련법령에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  
- 위 조례 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